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543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4. 접수 제202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23. 소외 C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02. 4. 7.부터 2003. 6. 16.까지, 보험금액 10,0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험사고가 2003. 4. 19. 발생하여, 원고는 2003. 8. 20. 피보험자인 D에게 보험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27290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5. 6.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4315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5. 6.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20. 10. 9.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25,691,748원이다.

다. 한편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4. 자녀인 피고 명의로 2018. 10. 25.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바,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내용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평주 평산구 답 671㎡ 지분 2분의1

- 끝 -

